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 . 10 . 평창군수(보건사업과장)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1 . 25 .

다. 상정일자 : 1998.11.25 제62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평창군 지역주민의 책임적인 보건의료 시행과 보건의료원의 제반 시설확충 및 인력수급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보건시설 및 장비 개선

(1) 보건의료원, 진료소 증·개축

- 증·개축수 : 1개보건의료원 및 8개진료소(미탄, 계촌, 방립, 다수, 도암, 마지, 대화, 면은)
- 예산소요액 : 4,414,300천원(국비 2,648,580, 도비 1,103,757,군비 662,145천원)

(2) 의료장비 개선계획

- 의료장비 : 21종(마취기, 검진차량, 전자내시경, 면역효소측정기, 전신단층촬영기등)
- 예산소요액 : 767,000천원(국비 460,200, 도비 191,750, 군비 115,050천원)

4. 검토내용

가.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지역의료보건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군수·도지사에게 9월말까지 제출하고 시·도지사의 계획시행은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하게 되어 있으나, 본 계획안은 제출시기가 다소 늦었음.

나. 추진경위를 살펴보면

-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'98.10.10.평창부군수,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의 17명으로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본 건을 심의하였으며,
- '98.10.17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금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임.

다. 본 계획은 생의 주기별, 서비스별, 진료보건사업, 시설개선계획, 의료장비 개선계획으로서 소요사업은 국비, 도비, 군비로 시행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등 군 재정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